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43466(본소), 2022가합41191(반소),
2022가합45513(반소) 판결 [대여금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 부당이득 등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변호사 박명수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 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2 ‘인용된 채권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별지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2023. 5.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0. 11. 25. 접수 제1249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각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D,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3억 6,000만 원과 그 중 23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지 1 '채권표'의 채권금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위 표 기산일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나머지 50억 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주식회사 B이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등기원인일란 기재 일자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별지 3 목록 접수란 및 등기원인란 기재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23. 접수 2021. 2.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주식회사 C의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97,780,143원과 그 중 818,387,663원에 대하여는 반소장 제출일로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신탁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E는 피고 B 및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E의 아들이다.

나.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F, G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들을 작성하였다(이하 위 차용증들에 기재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는 이 사건 ○번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순번	일자	금액(원)	이율(월)	채권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1	2015. 5. 20.	100,000,000	-	H	B	원고
2	2017. 1. 26.	100,000,000	10%	I	"	"
3	2017. 2. 8.	100,000,000	10%	"	"	"
4	2017. 9. 1.	300,000,000	9%	"	"	"
5	2018. 4. 13.	200,000,000	9.5%	"	"	"
6	2018. 11. 8.	100,000,000	9%	"	"	"
7	2018. 11. 14.	100,000,000	9%	"	"	"
8	2019. 7. 3.	200,000,000	10%	"	"	"
9	2017. 9. 11.	200,000,000	9%	"	F	원고, E
10	2017. 9. 11.	100,000,000	9%	"	"	"
11	2015. 7. 22.	100,000,000	-	H	"	원고
12	2017. 9. 1.	300,000,000	9%	I	G	"
13	2016. 1. 20.	460,000,000	1%	원고	"	E
합계		2,360,000,000				

다. 원고는 2020. 12. 7. I로부터 이 사건 1~12번 대여금 채권을 양수 받았고, I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1~8번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 또는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고 D은 이 사건 33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21. 2. 22.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1. 2. 23. 접수 제18896호로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0. 11. 25. 접수 제124997호로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1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 5, 8호증, 갑9호증의 1~52, 을나5, 12호증의 각 1~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본소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2~8번 대여금 채권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I로부터 이 사건 2~8번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8번 대여금 채권의 원금 합계 1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사실 이 사건 4번 대여금은 2억 원이고, 이 사건 7번 대여금은 9,000만 원이며, 이 사건 8번 대여금은 1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39946(본소), 2008다39953(반소)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가18,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용증(갑1호증의 4, 7, 8)에는 이 사건 4번 대여금이 3억 원, 이 사건 7번 대여금이 1억 원, 이 사건 8번 대여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점, ② 피고가 든 증거들은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G 또는 J에게 송금한 돈을 의미할 뿐 위 차용증상의 채권자인 I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아닌 점(을가18, 23, 24호증), ③ 원고와 I 사이의 법률관계, 피고 B와 G, J의 법률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송금한 돈을 근거로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1번 및 9~13번 대여금 채권

원고는 ① I로부터 I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1번 및 9~13번 대여금 채권을 양수 받았거나, ② 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사실 원고의 E에 대한 투자수익금 반환 채권인데 E가 운영하는 피고 B, 주식회사 F은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이고 G은 E의 아들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번 및 9~13번 대여금 채권의 원금 합계 12억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1번 및 9~13번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의 기재와 같은 법률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와 I 사이의 법률관계, E와 피고 B 사이의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용증상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1번 및 9~13번 대여금 채권을 일률적으로 원고와 E 사이의 투자수익금 반환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1, 11번 대여금 채권의 차용증상 채권자는 H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I가 이 사건 1, 11번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로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③ 이 사건 9~13번 대여금 채권의 차용증상 채무자는 피고 B이 아니라 주식회사 F 또는 G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I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9~12번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

⑤ E가 피고 B,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B이 주식회사 F, G이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증상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⑥ E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B, 주식회사 F를 함부로 이용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의 항변과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함께 이와 별도의 돈을 추가로 더 빌렸으나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이 초과로 변제한 897,780,14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을가1~28호증, 을나6호증의 1, 2, 을나7호증의 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 L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2~8번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할뿐더러, 이 사건 전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초과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고 B이 어떠한 변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 B이 제출한 거래내역은 원고와 G 사이의 거래내역, I와 G 사이의 거래내역,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거래내역, M와 G 사이의 거래내역, 원고와 J 사이의 거래내역, 원고와 주식회사 N 사이의 거래내역 등에 불과하다(을가1~28호증).

③ 차용증상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I이고, 채무자는 피고 B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 없이 피고 B이 들고 있는 위 거래내역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한 거래내역으로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별다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위 거래내역을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별도로 존재한다는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거래내역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④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었는지 여부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일인 2020. 12. 7. 이전에 양도인인 I에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위 양도일 이후에 양수인인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이 이러한 금전 지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과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기여공로금 채권 본소 청구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약 250억 원의 기여공로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5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23호증의 1, 갑24, 25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2~8번 대여금에 해당하는 별지 2 ‘인용된 채권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별지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D,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D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매매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D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 B의

적극적 재산, 소극적 재산, 소득을 알 수 있을 만한 재무제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이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C의 반소 청구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 C의 반소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와 서로 다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본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권리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기여공로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기여공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기여공로금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의 반소가 원고의 본소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기여공로금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기여공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기여공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나4, 1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 C은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21. 3. 19.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0억 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근저당 채무자인 G은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돈의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원고와 G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30억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C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원고의 피고 D,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 청구,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남재현, 판사 여한울, 판사 이 래

[별지 1]

채권표

순번	원금(원)	이율(월)	기산일
1	100,000,000	24%	2015. 5. 21.
2	100,000,000	24%	2017. 1. 27.
3	100,000,000	24%	2017. 2. 9.
4	300,000,000	24%	2017. 9. 2.
5	200,000,000	24%	2018. 4. 14.
6	100,000,000	24%	2018. 11. 9.
7	100,000,000	24%	2018. 11. 15.
8	200,000,000	24%	2019. 7. 4.
9	200,000,000	24%	2017. 9. 12.
10	100,000,000	24%	2017. 9. 12.
11	100,000,000	24%	2015. 7. 23.
12	300,000,000	24%	2017. 9. 2.
13	460,000,000	24%	2016. 1. 21.
합계	2,360,000,000		

[별지 2]

인용된 채권표

순번	원금(원)	이율(월)	기산일
2	100,000,000	24%	2017. 1. 27.
3	100,000,000	24%	2017. 2. 9.
4	300,000,000	24%	2017. 9. 2.
5	200,000,000	24%	2018. 4. 14.
6	100,000,000	24%	2018. 11. 9.
7	100,000,000	24%	2018. 11. 15.
8	200,000,000	24%	2019. 7. 4.
합계	1,100,000,000		

[별지 3]

목 록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접수	통기통연
1	Q리	P	대	7239			
2	Q리	R	전	2308	1	2021.03.19.제28072호	2021.03.16.매매
3	Q리	S	전	1126	1	2021.03.19.제28073호	2021.03.16.매매
4	Q리	T	전	539	1	2021.03.19.제28074호	2021.03.16.매매
5	Q리	U	전	71	1	2021.03.19.제28075호	2021.03.16.매매
6	Q리	V	전	531	1	2021.03.19.제28076호	2021.03.16.매매
7	Q리	W	전	307	1	2021.03.19.제28077호	2021.03.16.매매
8	Q리	X	전	421	1	2021.03.19.제28078호	2021.03.16.매매
9	Q리	Y	전	97	1	2021.03.19.제28079호	2021.03.16.매매
10	Q리	Z	전	20	1	2021.03.19.제28080호	2021.03.16.매매
11	Q리	AA	전	70	1	2021.03.19.제28086호	2021.03.16.매매
12	Q리	AB	전	132	1	2021.03.19.제28088호	2021.03.16.매매
13	Q리	AC	임	113	1	2021.03.19.제28070호	2021.03.16.매매
14	Q리	AD	전	56	1	2021.03.19.제28114호	2021.03.16.매매
15	Q리	AE	전	992	1	2021.03.19.제28111호	2021.03.16.매매
16	Q리	AF	전	73	1	2021.03.19.제28113호	2021.03.16.매매
17	Q리	AG	전	764	1	2021.03.19.제28124호	2021.03.16.매매
18	Q리	AH	전	210	1	2021.03.19.제28116호	2021.03.16.매매
19	Q리	AI	전	50	1	2021.03.19.제28118호	2021.03.16.매매
20	Q리	AJ	전	337	1	2021.03.19.제28119호	2021.03.16.매매
21	Q리	AK	전	172	1	2021.03.19.제28117호	2021.03.16.매매
22	Q리	AL	전	220	1	2021.03.19.제28120호	2021.03.16.매매
23	Q리	AM	전	202	1	2021.03.19.제28123호	2021.03.16.매매
24	Q리	AN	전	133	1	2021.03.19.제28122호	2021.03.16.매매
25	Q리	AO	담	2631	1	2021.03.19.제28081호	2021.03.16.매매
26	Q리	AP	전	797	1	2021.03.19.제28125호	2021.03.16.매매
27	Q리	AQ	전	354	1	2021.03.19.제28126호	2021.03.16.매매
28	Q리	AR	전	418	1	2021.03.19.제28067호	2021.03.16.매매
29	Q리	AS	전	413	1	2021.03.19.제28069호	2021.03.16.매매
30	Q리	AT	임	294	1	2021.03.19.제28121호	2021.03.16.매매
31	Q리	AU	전	486	1	2021.03.19.제28115호	2021.03.16.매매
32	Q리	AV	전	3736	5312/29888	2021.03.19.제28083호	2021.03.16.매매
33	Q리	AW	대	1321	1/5	2021.03.19.제28112호	2021.03.16.매매
P에 있는 AX연립주택							
34	AY동	AZ	주택	54.48	1	2021.03.19.제28086호	2021.03.16.매매
35	AY동	BA	주택	54.48	1	2021.03.19.제28087호	2021.03.16.매매
36	AY동	BB	주택	54.48	1	2021.03.19.제28088호	2021.03.16.매매
37	AY동	BC	주택	54.48	1	2021.03.19.제28089호	2021.03.16.매매
38	AY동	BD	주택	54.48	1	2021.03.19.제28090호	2021.03.16.매매
39	AY동	BE	주택	54.48	1	2021.03.19.제28091호	2021.03.16.매매
40	AY동	BF	주택	54.48	1	2021.03.19.제28092호	2021.03.16.매매
41	AY동	BG	주택	54.48	1	2021.03.19.제28093호	2021.03.16.매매
42	BH동	BI	주택	54.48	1	2021.03.19.제28094호	2021.03.16.매매
43	BH동	BJ	주택	54.48	1	2021.03.19.제28095호	2021.03.16.매매
44	BH동	BK	주택	54.48	1	2021.03.19.제28096호	2021.03.16.매매
45	BL동	BM	주택	54.48	1	2021.03.19.제28097호	2021.03.16.매매
46	BL동	BN	주택	54.48	1	2021.03.19.제28098호	2021.03.16.매매
47	BL동	BO	주택	54.48	1	2021.03.19.제28099호	2021.03.16.매매
48	BL동	BB	주택	54.48	1	2021.03.19.제28100호	2021.03.16.매매
49	BL동	BP	주택	54.48	1	2021.03.19.제28101호	2021.03.16.매매
50	BL동	BQ	주택	54.48	1	2021.03.19.제28108호	2021.03.16.매매
51	BL동	BK	주택	54.48	1	2021.03.19.제28109호	2021.03.16.매매
52	BL동	BG	주택	54.48	1	2021.03.19.제28110호	2021.03.16.매매

[별지 4]

목 록

1. 부산 기장군	P	대	7,239㎡
2. 부산 기장군	R	전	2,308㎡
3. 위	S	전	1,126㎡
4. 위	T	전	539㎡
5. 위	U	전	71㎡
6. 위	V	전	531㎡
7. 위	W	전	307㎡
8. 위	X	전	421㎡
9. 위	Y	전	97㎡
10. 위	Z	전	20㎡
11. 부산 기장군	AA	전	70㎡
12. 위	AB	전	132㎡
13. 위	AC	임	113㎡
14. 위	AD	전	56㎡
15. 위	AE	전	992㎡
16. 위	AF	전	73㎡
17. 위	AG	전	764㎡
18. 위	AH	전	210㎡
19. 위	AI	전	50㎡
20. 위	AJ	전	337㎡

21.	위	AK	전	172㎡
22.	위	AL	전	220㎡
23.	위	AM	전	202㎡
24.	위	AN	전	133㎡
25.	위	AO	답	2,631㎡
26.	위	AP	전	797㎡
27.	위	AQ	전	354㎡
28.	위	AR	전	418㎡
29.	위	AS	전	413㎡
30.	위	AT	임	294㎡
31.	위	AU	전	486㎡
32.	위	AV	전	3,736㎡

중 5312/29888지분

33. 위 AW 대 1,321㎡ 중 1/5지분
34.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AY동
AY동 AZ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35.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AY동
AY동 BA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36.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AY동
AY동 BB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37.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AY동
AY동 BC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38.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AY동

AY동 B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39.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AY동

AY동 B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40.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AY동

AY동 B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41.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AY동

AY동 B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42.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H동

BH동 BI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43.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H동

BH동 B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44.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H동

BH동 B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45.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L동

BL동 B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46.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L동

BL동 B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47.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L동

BL동 BO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48.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L동

BL동 BB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49.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L동

BL동 B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50.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L동
BL동 B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51.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L동
BL동 B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52.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BL동
BL동 B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별지 5]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 BL동

[도로명주소]

부산 기장군 BR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동주택(연립주택)

1층 486.24㎡

2층 486.24㎡.

3층 486.2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 기장군 P 대 723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BS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7239분의 113.109375

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 AY동

[도로명주소]

부산 기장군 BR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동주택(연립주택)

1층 495.58㎡

2층 486.24㎡.

3층 486.2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 기장군 P 대 723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B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7239분의 113.109375

3.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 AY동

[도로명주소]

부산 기장군 BR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동주택(연립주택)

1층 495.58㎡

2층 486.24㎡.

3층 486.2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 기장군 P 대 723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B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7239분의 113.109375

4.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AX연립주택 AY동

[도로명주소]

부산 기장군 BR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동주택(연립주택)

1층 495.58㎡

2층 486.24㎡.

3층 486.2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 기장군 P 대 723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BT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7239분의 113.109375

5. 부산 기장군 AV 전 3736㎡ 중 37360분의 4965

6. 부산 기장군 BU 전 153㎡

7. 부산 기장군 BV 답 651㎡ 중 1927분의 1000

8. 부산 기장군 BW 전 82㎡

9. 부산 기장군 BX 전 7㎡

10. 부산 기장군 BY 전 26㎡

11. 부산 기장군 BZ 전 31㎡

12. 부산 기장군 CA 전 182㎡

13. 부산 기장군 CB 전 129㎡ <끝>

